



소방법령 운용실태 고찰 <소방공사 및 유지관리 중심으로>

이상용

(주)지티에스이앤씨 부장

1. 서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과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일반 대중이 준수하여야 하거나 알 수 있는 법령이기 보다는 소방전문가들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소방산업은 첨단 소재개발 등의 연구나 기술개발에 재투자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업 등도 대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가제품의 양산과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에 있어 과도한 최저가 수의계약은 소방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제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력은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술인력은 경제성장에 따른 안전의식과 시설투자의 증가폭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기술력은 향상되고 있지만 개인별 기술력은 큰 차이가 나면서 수준이 미달하는 기술자에 의해 부실공사의 여러 징후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방시장의 규모나 인력수급을 고려치 않고 많은 대학에 소방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사설 소방학원의 폭발적 증가와 대대 포장된 홍보경쟁으로 인해 과유불급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소방법령의 일

부조항은 소방안전과 소방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하루속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해결책은 정책기관 단독으로 전담하는 것보다는 관계단체 또는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하여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의 문제점 분석

가.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및 계약제도

수의계약이란 공사의 도급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등의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나 소방에서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계약방법은 발주자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일방적인 계약으로 발주자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무리한 변경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해 저급자재의 사용과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타 분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입

이상용

찰자격심사제라는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적합한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사업자만이 입찰 받을 수 있도록 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분야는 영세성과 일부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에 의해 소방정책이 발전되지 못하고 과거의 수의계약 제도를 세습하여 오고 있어 소방안전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나. 소방시설업의 학경력 인정기술자

학·경력 인정제도는 과거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 운용되었지만 현재 국가기술자격자의 배출 규모를 볼 때 국가적 사회적 도입 원인이 이미 소멸하였지만 타 분야와 달리 소방분야는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경력 소방기술자의 기형적인 공급과잉, 국가기술자격자의 고용 불안 증가, 변형적 소방기술자 등급으로 인해 기술력이 하향평준화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기술자의 증가와 더불어 소방 관련학과는 최근 들어 70여개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소방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채용하려는 기업

체의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미 소방시설업의 기술 인력은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가 적정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배출되어 있어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관련 분야의 대부분의 기술자는 소방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인정되지만 소방기술자는 타 분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타 분야는 전문성을 위해 학경력자를 제한하는 등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타 분야에서 소방시설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반면, 소방 전문기술인력의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관계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소방시설을 설계 및 시공·감리하는 소방시설업은 일정이상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일부 거론 하였듯이 최저기술인력은 사업자간 지나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소방시설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원인 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표 2-1] 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특징 비교

구분	소방분야		전기분야												
설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 : 모든 시설의 설계일반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종합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전문1종: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전문2종: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기술 인력	<table border="1"><tr><td>전문소방 시설설계업</td><td>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td></tr><tr><td>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td><td>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td></tr><tr><td>전기 분야</td><td>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td></tr></table>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table border="1"><tr><td>종합설계업</td><td>전기분야 기술사 2인 설계사 2인 설계보조자 2인</td></tr><tr><td>전문 설계업</td><td>1종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td></tr><tr><td>2종</td><td>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td></tr></table>	종합설계업	전기분야 기술사 2인 설계사 2인 설계보조자 2인	전문 설계업	1종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2종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종합설계업	전기분야 기술사 2인 설계사 2인 설계보조자 2인														
전문 설계업	1종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2종	설계사 1인 설계보조자 1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내 대부분의 설계도서가 일반설계업에서 작성되고 있음전문설계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일반업의 타 분야 겸업으로 전문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든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는 전문 1종 이상에서 작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소방법령 운용실태 고찰

그렇지만 소방시설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주요원인으로 수의계약제도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업의 전문업의 영업범위와 기술인력 기준의 문제를 표와 같이 비교하여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안전이라는 영역을 전문화 하지 못하고 타 분야에 영역을 양보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닌 소방안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공사에 있어 하도급의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제도권에서 이해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법령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소방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개선에 따라 소방공사 기술자의 배치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완화하고 있는 것은 소방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방공사를 수행하는 소방기술자는 대부분이 인정 기술자로 배치되어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적합한 시공이 만연하고 있기도 하다. 소방시설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능력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감리가 있어 공사 기술자는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는 것이다.

소방감리는 소방시설의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유효하고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이해하고 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적합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지 또는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하는지 등의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대규모 소방공사의 경

[표 2-2] 소방감리원 배치기준과 전기분야 자격기준 비교(기술자 등급 비교)

소방분야	전기분야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제22조 제2항 관련)	
구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사용 설비 · 기타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 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수 있다.

이상용

[표 2-3] 감리원의 상주대상 및 보조인력 기준 비교

소방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9조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 25조 제2항관련)		
종류	대상	구분	규모	
상주공사 감리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가. 공동 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일반공사 감리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800세대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소방분야는 보조감리원의 배치기준이 없음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책임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이상 추가배치

우에도 감리원 1인만을 배치하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소방대상물도 주 1회만 방문 점검하게 되어 사실상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타 분야는 면적 또는 공사금액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 및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감리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제도에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기술자의 감리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분야에는 감리원의 등급만을 규정하여 면적에 따른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감리원의 수행실적(경력)을 평가

하지 않아 공사의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 수행능력이 미달한 감리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감리원 배치기준이 소방시설공사에서 하나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방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획일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민관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감소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소방안전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소방법령 운용실태 고찰

[표 2-4] 시설관리업 및 전기안전대행업의 비교

구분	소방분야(점검, 방화관리)	전기분야(안전대행)
인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8] 주된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보조인력 : 소방기사, 산업기사, 학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주된인력 :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보조인력 :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지역제한	- 규정 없음	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 · 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점검범위 (대행범위)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②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회수는 별표 13과 같다.

으로 판단된다.

소방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시행된 소방시설점검제도 또한 분리발주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수의계약을 취하고 있다. 입찰제도와 달리 수의계약은 사업수행능력에 관계없이 이뤄지므로 업체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점검범위 및 지역범위기준이 없는 현행제도 속에서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 부산과 서울의 소방대상물을 동시에 점검하였다고 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전기 분야는 소방과 달리 전기안전대행의 점검대상과 점검범위, 지역범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편법운용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점검 기술 인력은 전문기술력을 가진 전기기술사 및 경력 전기기사로 하여금 점검을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과 달리 자격증 대여문제가 심각하게 유발되지 않고 있다.

3. 소방법령의 개선 방향과 대책

가. 소방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소방시설업의 영세성과 최저가 수의계약,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격자 보유 및 배치기준 등이 부실공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소방시설업의 영세성과 기술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듯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대안으로 건설분야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여 건설화를 이뤄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를 소방에서도 하루속히 도입하여 소방시설업의 건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방단체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기술자 경력관리를 엄밀하게 수행하고 경력기술자의 보유 및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기술향상에 이바지 하고 소방산업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나. 학 · 경력제

소방산업의 수행과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인력 확보라는 대안으로 인정되어온 학 · 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원인 소멸되어 타 분야는 이미 이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소방분야에서만 이를 고집하여 학 · 경력 소방기술자의 기형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가로막아 국가기술력 저하 등 사회적 폐단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학 ·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사회적 폐단과 문제점을 외면하고 국가기술자격법과의 불합치성에 대항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정책입안기관 스스로 소방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여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책기관의

이상용

특권적인 재량권을 빙자해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방기술자의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제도를, 소방기술자 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한 아직까지도 개선을 희망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입찰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자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타 분야 기술자를 인정하는 것은 타 분야에서 소방분야를 겸업으로 영위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방산업이 타 분야에 종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소방설계도서는 소방대상물에 최적의 소방시설이 설치계획 되도록 고려한 설계자의 의도를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방공사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만큼, 소방관련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방설계도서가 현장에서 참고용에 불과하거나 중대한 설계변경요인이 대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설계업체의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인 만큼 설계 기술인력은 주된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특급 및 고급 등의 경력기술자로 하여금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설계업의 설계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설계도서는 전문설계업에서 이뤄지도록 하여야 소방안전과 시설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지는 것으로 전문설계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설계범위 확대와 전문기술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영세성과 난립 때문에 시설업 영역의 기반을 다져오지 못하였으며, 최저가 수의계

약으로 인해 업역의 독립적 발전을 못하고 타 분야의 겸업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하루속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전문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덧붙여 소방시설공사의 기본적인 기준과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시방서를 제정 고시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인부를 선별 없이 소방기술인정자격자로 인정하는 제도 자체도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제도이며, 소방학과 학생의 업계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는 규모에 따라 등급별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양질의 소방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의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공사 상주감리원의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위험도 등에 관계없이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주감리원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분야 등 타 분야는 감리원의 상주감리 대상 기준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금액 또는 세대수 및 면적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표 2-2]와 [표 2-3]에서 비교한 바 있다.

이렇듯 타 분야에 미치지 못하는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1인의 상주감리원만을 배치하고 있어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현장에 주 1회 방문하는 일반감리대상의 경우에도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감리원의 업무한계를 초과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망과 법적책임까지 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소방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대상물부터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공사규모에 따른 보조인력 신

설은 소방공사의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인력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 소방학과 학생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획일적 규정에 의한 감리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공정에 따라 상주감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시설점검업은 대상시설의 특성상 점검 및 진단을 전문기술자가 하여야 하지만, 전국의 소방대상물을 1인이 동시에 점검을 하였다고 하거나 초보기술자 및 비정규직에 의한 점검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관리사 1인의 하루 점검면적은 불과 2만 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시설을 동시에 점검을 하거나 몇십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점검하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모순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범위 등에 지역제한과 점검면적 등의 기준이 없어 과도한 경쟁 유발로 부실점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2-4]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대행처럼 대상 및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편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소방시설점검을 개선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소방법령의 개정은 소방안전과 소방산업의 발전 전반에 거쳐 커다란 영향력이 미치는 규정들을 개선하는 것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가 거론한 일부 법령 개선방안들이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소방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거나 일부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소방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견인할 PQ제도의 도입은 영세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도태를 초래할 수 있고, 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에 따른 재편으로 인해 일부 기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소방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이해득실이 다르지만, 소방안전과 소방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 변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소방인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방법령이 정책입안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개정되어오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뤄온 반면, 그 이면에는 보수적 관료주의 때문에 후진적인 정책이 답습되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소방정책에 있어 소방산업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의 한정된 시각으로 판단하는 정책입안자의 편협한 시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책기관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방산업의 특성과 건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소방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현실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소방정책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소방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것인 만큼 이제는 획기적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방정책입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그 의견과 정책을 수렴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역할자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전문단체 등과 상시 또는 수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및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전문연구가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소방안전과 소방산업의 발전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예방통계자료(소방방재청)
2. 소방법령개선의견서(한국소방기술인협회)
3. 소방관계법령 및 전기관계법령



〈저 자〉

이 상 용
(주)지티에스이앤씨 부장